

19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1. 개	요	381
가.	수정예산(안) 편성 규모	381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세입 총규모	382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세출 총규모	383
2.	수정예산(안) 편성 사유	384
3.	검토내역 및 의견	384
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내역	384
나.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출내역	385
다.	검 토 의 건	387

1. 개 요

가. 수정예산(안) 편성규모

19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편성규모는 5.1%가 증가한 5,851억 1,418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3억 5,193만원인 3.7%가 증가된 4,567억 2,040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18억 5,464만 7천원인 10.2% 증가된 1,283억 9,377만 7천원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본 예 산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585,114,186	100	556,907,609	100	28,206,577	5.1
○ 일반회계	456,720,409	78.1	440,368,479	79.1	16,351,930	3.7
○ 특별회계	128,393,777	21.9	116,539,130	20.9	11,854,644	10.2
- 공기업특별회계	107,608,563	18.4	95,753,916	17.2	11,854,647	12.4
· 공기업특별회계	51,354,649	8.8	39,500,002	7.1	11,854,647	30.0
· 지역개발사업	56,253,914	9.6	56,253,914	10.1	-	-
- 기타 특별회계	20,785,214	3.5	20,785,214	3.7	-	-
· 의료보호기금	16,356,234	2.8	16,356,234	2.9	-	-
· 농어촌소득개발 기금운영관리	2,562,625	0.4	2,562,625	0.5	-	-
· 대청호 특별회계 지역환경기초 시설운영관리	1,866,355	0.3	1,866,355	0.3	-	-

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세입 총규모

19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5,569억 760만 9천원보다 5.1% 증가된 5,851억 1,418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63억 5,193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18억 5,464만
 7천원이 증액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본 예 산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585,114,186	100	556,907,609	100	28,206,577	5.1
· 지방세	124,005,000	21.6	120,139,000	21.6	3,866,000	3.2
· 세외수입	119,131,325	18.6	103,862,258	18.6	15,269,067	14.7
-경상적세외수입	10,543,836	1.3	7,299,416	1.3	3,244,420	44.4
-임시적세외수입	108,587,489	17.3	96,562,842	17.3	12,024,647	12.5
· 지방교부금	112,708,000	19.3	107,646,000	19.3	5,062,000	4.7
· 지방양여금	43,900,752	8.9	49,288,667	8.9	△ 5,387,915	△ 10.9
· 보조금	114,081,502	18.8	104,955,645	18.8	9,125,857	8.7
· 지정재원	71,287,607	12.8	71,016,039	12.8	271,568	0.8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세출 총규모

199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출 총규모는
 본예산(안) 5,569억 760만 9천원보다 일반회계에서 163억 5,193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18억 5,464만 7천원이 증액된 총 5,851만 1,418만 6천원 규모임.

회 계 별	예 산 안		본 예 산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585,114,186	100	556,907,609	100	28,206,577	0.3
· 인 건 비	40,846,172	7.3	40,846,172	7.3	-	-
· 물 건 비	31,630,831	5.6	31,135,445	5.6	495,386	1.6
· 이 전 경 비	147,381,207	26.1	145,310,075	26.1	2,071,132	1.4
· 자 본 지 출	281,454,573	45.5	253,199,127	45.5	28,255,446	11.2
· 용 자 및 출 자	33,379,764	6.0	33,379,764	6.0	-	-
· 보 전 재 원	31,213,293	5.6	31,213,293	5.6	-	-
· 내 부 거 래	5,498,294	1.0	5,498,294	1.0	-	-
· 예 비 비 및 기 타	13,710,052	2.9	16,325,439	2.9	△ 2,615,387	△ 16.0

2. 수정예산(안) 편성사유

-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의 확정내시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계상

3. 검토내역 및 의견

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내역

기정예산(안) 4,403억 6,847만 9천원의 3.7%인 163억 5,193만원이 증가되어 4,567억 2,040만 9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검토한 바,

첫째, 지방세에서는 징수전망액이 당초보다 3.2%인 38억 6,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서 25억 7,50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17억 6,60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4억 7,500만원이 감액됨.

둘째, 세외수입에서 징수전망액이 당초보다 14.7%인 152억 6,906만 7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이자수입과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증액된데 기인함.

셋째,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당초 1,076억 4,600만원에서 50억 6,200만원이 증액된 1,127억 8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당초 492억 8,866만 7천원에서 53억 8,791만 5천원이 감액된 439억 75만 2천원을 계상한 것에 기인됨.

넷째, 국고보조금은 당초 1,049억 5,564만 5천원세어 91억 2,585만7천원이 증액된 1,140억 8,150만 2천원으로 확정내시 된것에 기인됨.

다섯째, 기정재원은 당초 710억 1,603만 9천원에서 2억 7,156만 8천원이 증액된 712억 8,760만 7천원으로 사회복지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이 증액된 데 기인함.

나.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출내역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검토한 바,

첫째,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둘째, 인건비에서 기정예산(안)의 1.6%인 4억 9,538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산림입지조사 인건비 및 여비, 화경보전중 계획용역비, 개발촉진지구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가 증액된 것으로 기인됨.

셋째, 이전경비에서 기정예산(안)의 1.8%인 20억 7,113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 추가징수 교부금, 우수공예기능인 및 업체지원개발비 지원, 서울 국제공예품 박람회 참가위탁금등이 증액계상된 것으로 기인됨.

넷째, 자본지출에서 기정예산(안)의 7.6%인 177억 8,541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 사회복지분야에서 10개 사업에 12억원

-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비사업
- 오염하천 정화사업등 계상

○ 농수산분야에서 5개 사업에 7억여원

- 집단마을 조성사업
- 쌀 권업농 육성
- 수련시설 개·보수등 계상

- 도로교통분야에서 12개 사업에 14억여원
 - 도로유휴부지 정비사업
 - 취약지 도로 정비등 계상
- 치산치수분야에서 5개 사업에 8억여원
 - 양수장 시설
 - 재해위해 지역정비등 계상
- 지역개발분야에서 15개 사업에 64억여원
 - 관광진흥
 -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등 계상
- 문화 체육분야에서 3개사업에 1억여원
 - 생활체육교실 운영
 - 사격장 보수등 계상
- 민방위·소방분야에서 2개 사업에 4억여원
 - 소방파출소 신축등 계상

다섯째, 용자 및 출자에서는 증감없음.

여섯째, 보전재원에서는 증감없음.

일곱째, 예비비 및 기타는 40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분담액을 감액시킨 것임.

다. 검토의견

'95년도 시·군에서 지원하는 주요보조사업은 89개분야에 총 1,116억원으로서 시·군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균형되게 배분된 것으로 생각되나, 재원이 분산투입되므로써 투자의 효율성이 감소하는 것과 당면 현안사업이나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상호 비교하여 예사투입을 신중히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시·군 주요보조사업 >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사업량 (분야)	사업비	재 원 별				
			양여금	중앙기금	국 비	도 비	시군비
국고보조사업	31	35,825	-	-	18,815	5,514	11,496
중 앙 기 금 지 원 사 업	16	536	-	269	-	130	137
지방양여금 사 업	10	67,718	38,170	-	-	24,215	5,333
도비보조사업	32	7,526	-	-	-	5,463	2,063
합 계	89	111,605 (100%)	38,170 (34%)	269 (0.2%)	18,815 (16.8%)	35,322 (32%)	19,029 (17%)